

3.1.19 시설물사용위원회규정

제정 2001. 09. 1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의 모든 시설물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시설물 사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, 부위원장은 사회체육학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총무과장, 교무과장, 관리과장을 포함한 교직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기록·정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에서 1인의 간사를 임명한다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심의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사용승인 및 제한

② 사용기간 및 시간

③ 기타 시설물사용에 관한 중요사항

제5조(심의 범위)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본 대학의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① 강의실 및 시청각실

② 체육관 및 부대시설

③ 체육장(운동장, 테니스장 및 농구장 등)

④ 강당 및 회의장

⑤ 기타 본 대학의 모든 시설물

제6조(사용대상) 위원회에서는 본 대학 시설물은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학생수업, 실습 및 연구, 특히 시설물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